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흠제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81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08월 02일

발 의 자 : 성흠제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박순규, 홍성룡, 전병주, 오중석,
이병도, 정진술, 최정순, 김정환,
송아량, 김태호, 김정태, 강동길,
최웅식, 전석기, 김평남, 김기대,
문장길 의원 (17명)

1. 제안이유

- 현행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하시설물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해야 했던 주변지반에 대한 공동(空洞)조사를 서울시가 일괄로 대행하고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공동(空洞)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“공동(空洞)” 및 “공동(空洞)조사”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 제5호 및 제6호).
- 나.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의 원칙을 규정함(안 제12조).
- 다. 지하안전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함(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공동(空洞)”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
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
6. “공동(空洞)조사”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
변지반에 침하·공동(空洞)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
한다.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공동조사 대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
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
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대행
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
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.

1.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
2.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

대상과 중복되는 경우

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서울특별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,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padding-righ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공동(空洞)”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.</u></p> <p>6. <u>“공동(空洞)조사”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·공동(空洞)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.</u></p> <p>제12조(공동조사 대행 등) ① 시장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<u>공동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지하시설물관리자가 시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</u></p>

제12조 (생략)

2. 시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3조 (현행 제12조와 같음)